

2019년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세출 공고
“The Days. With Us”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활동지원사업)의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총괄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총계	3,748,172	총계	3,748,172
사업수입	3,429,840	인건비	3,303,451
		업무추진비	5,260
과년도수입	317,080	운영비	78,089
		시설비	2,000
이월금	251	활동지원사업비	50,440
잡수입	1,000	과년도지출	281,793
		잡지출	1,002
		예비비	26,135

예산총칙

제1조 (예산의 규모)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회계의 2019년도 총 세입액은 3,748,172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3,748,172천원이다.

제2조 (예산의 내역)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관 또는 항 단위).

1) 정부보조금	3,429,840천원	2) 기타보조금	0원
3) 후원금	0천원	4) 잡수입	1,000천원
4) 과년도 수입	317,080천원	5) 이월금	251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 또는 항 단위).

1) 인건비	3,303,451천원	2) 업무추진비	5,260천원
3) 운영비	78,089천원	4) 재산조성비	2,000천원
5) 사업비	50,440천원	6) 기타사업비	0천원
7) 과년도지출	281,793천원	8) 잡지출	1,002천원
9) 예비비	26,135천원		

제3조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제4조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한다.

제5조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에 있어 '항'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목'간의 전용은 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할 수 있음.

제6조 (예산의 집행) 예산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년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함.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